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4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서미화·김선민·이기현
서영석·김남희·한창민
소병훈·이수진·윤종오
허성무·전종덕·남인순
박은정·이해민·정혜경
용혜인·김준형·신장식
강경숙·손 술·민병덕
최혁진·정춘생·송기현
서왕진·차지호·김영배
북기왕·김주영·양문석
강준현·백선희·김 윤
김동아·박홍배·허종식
김종민·이원택·차규근
의원(39인)

제안이유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일반논평 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1개의 방에 평균 4.7명이 거주하고,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6.7명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

균 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함.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음.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나.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법정지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시·도지사는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의 정도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하여 2041년 이내에 모든 형태의 장

애인 생활시설을 폐지하여야 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제한하여야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목표달성연도 이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의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또는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안 제42조 및 제4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의 이행에 따라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적절히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가족, 근로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피해생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로서 탈시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생존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설수용의 종식과 지역사회의 완전한 참여 및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란 사회적·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

른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주거지를 제공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또는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인권침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 폭행,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장애인 생활시설

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간의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나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장애인 생활시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는 장애인을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 2) 거주하는 장애인의 통신, 면회, 외출, 외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 3) 거주하는 장애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간 감

시·감독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관련 법령에 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5) 거주하는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 그 밖에 관계 행정청 및 수사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6) 거주하는 장애인 소유의 금품, 장애인의 임금,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있는 자신의 가정 등 일반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5. “단계적 조치”란 장애인의 시설 수용 종식을 위하여 목표달성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취해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인원의 단계적 감축 및 시설 폐쇄 조치를 말한다.

6. “법정지원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에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자

다. 성년인 장애인의 후견인

라. 그 밖에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명하
는 사람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법적 능력 유무나 의사소통 능력, 연령, 장애
정도, 건강 상태나 의료적 상황, 지원 필요 정도 등을 이유로 장애
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하고,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함께 거주할 사람(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해에 따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⑥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법정지원인의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시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현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시설을 폐쇄해 나감으로써 시설 수용을 종식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장애인 복지의 한 형태로 인정하거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신규 입소·전원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대표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의료적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을 우선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관한 복지정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법정지원인의 책무) ① 법정지원인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또는 직원은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법정지원인이 될 수 없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및 시설 폐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지원에 관하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두 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은 장애인 권익에 보다 부합하는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관 및 업무 등

제9조(탈시설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탈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탈시설 한 장애인의 실태·주거·소득·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탈시설 한 장애인 지원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및 목표달성연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과 부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중앙탈시설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탈시설위원회는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탈시설 하는 장애인의 주거·소득·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및 목표달성연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탈시설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중앙탈시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앙탈시설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중앙탈시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세부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중앙탈시설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⑦ 중앙탈시설위원회와 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탈시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탈시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탈시설 장애인 또는 탈시설 장애인단체의 대표
 3. 장애인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장애인 탈시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2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지역탈시설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탈시설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나 관련 단체 대표자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③ 지역탈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①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의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 지원
2.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감축·폐지 실행계획 수립 지원
3.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고용전환 및 거주장애인 가족지원 등에 관한 총괄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통합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조사 및 폐지 계획 수립 지원
2. 제21조 각 호에서 정한 지원 사항
3.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전직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탈시설 지원

제14조(탈시설에 관한 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①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은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전담인력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탈시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자(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방문한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업

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 허위정보 제공, 정서적 학대, 방문 거부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생활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탈시설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지역사회 정착 필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지역통합지원센터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지원계획을 6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장애인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강요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탈시설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대기목록(이하 “지원대기목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탈시설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
- 2. 제17조의 정기조사에 따라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시설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
- 3.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 장애인
- 4.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기목록에 등록한 장애인이 자립지원서비스를 신청 후 1년 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지원대기목록 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및 법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의 기준·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19조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탈시설 지원)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제22조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2.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탈시설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4.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탈시설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탈시설 지원대상자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⑤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의료인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⑥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탈시

설지원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을 가진다.

⑦ 시·도지사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법정지원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절차,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준비 의무) 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탈시설 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이하 “시설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시설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협조
2. 제17조에 따른 시설 장애인 조사 협조
3. 제24조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제공 협조
4. 그 밖의 탈시설 준비 및 전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24조(단기체험 프로그램)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

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탈시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단기 체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 체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위탁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긴급탈시설지원) 시·도지사는 학대, 재난, 감염병, 보호자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탈시설을 즉시 지원(이하 “긴급탈시설지원”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26조(정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확보 및 지원
2.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등 지원
3. 주택 제공 및 주거서비스 지원
4. 지원주택 운영
5. 자립생활주택 운영

6.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7. 자립 정착금 지원
8. 소득 유지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9.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
10. 주간활동, 평생교육, 돌봄 등 낮시간 활동 지원
11.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12. 행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13.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지원
14.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15. 그 밖에 정착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지원주택 공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사회주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 매월 임차비용 및 개수·보수 비용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영위를 위하여 별도의 인력 등을 통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계획 수립·운영, 입주 지원,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등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된 활동지원급여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자립정착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소득보장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애수당 또는 보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공공일자리 등 고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과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의 일정 인원을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로 할당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평생교육,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주간 활동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돌봄지원 등을 장애인 생활 시설 퇴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의료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제36조(탈시설지원 모니터링)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완전한 통합의 달성 정도를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 평가·보고) ① 지역통합지원 센터의 장은 매년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주 의사를 확인한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조치 등

제38조(단계적 조치의 목표달성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및 입소 제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

며, 그 외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및 이전 등과 같은 시설의 확대나 운영 유지를 도모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생활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입소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단계적 조치의 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목표달성연도 이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1조(단계적 조치의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에는 현원 3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2. 현원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4년 이내에 현원 30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장애인 생활시설의 폐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의한 단계적 조치 명령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권침해시설
3.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시설거주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타 시설로의 전원조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명령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로의 전원이나 재입소, 원가정복귀를 권유하거나 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탈시

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단계적 폐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거주장애인과 가족, 근로자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이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점차 입소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폐지가 달성되기 이전까지 근로자의 급여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예산 및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시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시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에 따라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생활시설 운영자의 능력, 해당 지역의 장애인 복지 특성,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현황, 서비스 필요도 등을 감안하여 폐지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시설이나 기타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환 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생활시설 운영자가 고용 유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시설의 폐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따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해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새롭게 생기거나 확대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취업 정보 및 기회의 제공

⑤ 제4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생활시설 운영자 및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시설 운영자 및 시설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는 제41조 및 제42조의 이행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육체적·경제적 방식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라도 부양의 의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시설 운영자는 시설거주장애인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설거주장애인이 퇴소 이후 받게 될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대한 정보와 안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족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의 시설 수용 정책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피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등을 이유로 시설거주장애인이 직접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가족 등 연고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후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적절한 원가정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생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단계적 조치 및 폐쇄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장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 지원

제49조(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쇄되는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의 탈시설을 위한 지원조사

2.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에 긴급탈시설지원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제50조(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 완료 전이라도 지체 없이 3일 이내에 가해자(피신고인을 포함한다)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1조(인권침해시설 거주 피해생존자를 위한 임시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가 임시로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가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피해생존자의 의사에 따라 탈시설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긴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아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벌 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를 위반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예산을 지원받거나 신규 입소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41조에 따른 단계적 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제42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